

가상화폐 관련 형사법적 문제에 관한 고찰

이정훈*·김두원**

국 | 문 | 요 | 약

최근 랜섬웨어를 통한 해킹에서 비트코인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해졌다. 그만큼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는 익명성을 중요시하는 암시장, 즉 블랙마켓에서는 더욱 중요한 거래수단이 된다. 하지만 가상화폐의 기반이 되는 블록체인 기술이 핀테크 등 미래의 금융에서 중요한 기술이 되는 만큼 규제로 일관하는 태도를 취할 수는 없다. 따라서 범죄에 활용된다는 불안과 변화의 큰 흐름에서 기회를 이용해야 한다는 실리 사이에서 합리적인 해결점을 생각해야 할 시점이기 때문이다. 기술적으로 발전한 가상화폐, 특히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그 효용성과 그로 인한 사기, 도박, 탈세 및 테러 등 각종 범죄 발생의 가능성, 그리고 이에 대처할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각국의 금융당국에 의한 통제를 받지 않겠다는 취지로 온라인에서의 안전한 거래를 표방하여 블록체인 방식의 가상화폐가 자발적으로 등장하였는데, 가상화폐가 갈구한 자유는 오히려 지하 경제에서의 수단을 확대한 결과도 초래하였다. 지금까지 정부당국은 그 정책목적은 달성하기 위해 중개기관에 대한 규율만으로 충분했지만,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의 블록체인 시스템이 확산 될 경우 단순한 지급행위를 통제하는 것조차 어렵게 된다. 만일 중개기관이 없이 수백만의 P2P 이용자들만 있다면,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가능하더라도 그 집행비용이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정부가 정보 통제를 함에 있어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을 감안해야 한다. 하향식 규제가 적절한 대안이 아니라면, 정책당국자는 탄력적이고 변경 가능한 수단에 초점을 맞춘 대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 주제어 : 가상화폐, 비트코인, 채굴, 지갑, 블록체인, 온라인사기, 온라인도박, 해킹, 횡령, 절도, 테러, 마약, 탈세

*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박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미래첨단연구실 인턴연구원, 중앙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수료

I. 서 설

최근 김정남 암살 사건으로 국제사회가 떠들썩한 가운데 김정남의 아들 김한솔이 자신이 살아있음을 인터넷 동영상으로 밝혔다. 그와 동시에 영상에는 후원단체라고 주장하는 ‘천리마민방위’라는 곳이 등장하였는데, 그 단체에서 김한솔과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한 후원금을 비트코인으로 모집하면서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또한 2016년 5월 오픈마켓인 ‘인터파크’에서는 1,030만 명의 회원정보가 해킹을 당하였는데, 이 정보를 빌미로 해커는 30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요구한 사례¹⁾도 있었다. 요즘은 랜섬웨어 해킹에서 비트코인을 요구하기도 한다.

사실 인터넷 보급 초기부터 이미 금융거래과정에서 정보기관 및 금융회사에 개인의 거래기록 정보가 넘어가는 것을 꺼려했던 자유주의 성향이 강한 인터넷이용자들을 중심으로 현금과 같이 이용이 편리하면서도 정부 및 금융기관의 추적이 불가능한 디지털 통화 또는 가상화폐(Virtual Currency) 도입 시도는 꾸준히 이어져 왔다. 그러나 기존의 도입 시도는 대부분 실패로 끝났다. 하지만 2013년 말경에 일어난 ‘비트코인’ 열풍으로 가상화폐가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비트코인의 최대 거래소였던 마운트고크스(Mt. Gox)가 파산하면서 그 열기가 꺾이기는 했지만, 최근 애플(Apple),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델(Dell), 페이팔(Pay Pal)에서 비트코인을 지급결제수단으로 인정²⁾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기도 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CJ E&M에서 영화 VOD서비스의 결제수단으로 비트코인을 추가³⁾했었다. 비트코인이 가상화폐들 중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현실경제와의 연계 수준이 기존의 가상화폐들보다 한층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는 가상 사회를 표방한 게임인 세컨드 라이프(the Second Life)에서 쓰이는 가상화폐 중 하나인 린든 달러(Linden Dollar)를 고안한 린든 랩(the Linden Lab)은

1) 뉴데일리 전경웅기자, “‘인터파크’ 해킹 北 정찰총국, ‘비트코인’은 왜?”, 2016.07.30.자 기사 참조. [2017.04.02. 검색] <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318172>

2) 서울경제신문, “글로벌 기업들, ‘비트코인’을 도입하다”, 2014.12.12.자 기사 참조. [2017.03.28. 검색] <<http://economy.hankooki.com/lpage/it/201412/e20141212173826117700.htm>>

3) 아주경제, “CJ E&M N스크린 영화 서비스 ‘빙고’에 비트코인 결제 적용”, 2014.11.26.자 기사 참조. [2017.03.28. 검색] <<http://www.ajunews.com/view/20141126141203442>>

이를 가상사회 내에서의 가치저장수단 및 교환수단의 목적으로만 고안⁴⁾했었다. 하지만 그 의도와는 다르게 린든 달러가 현실사회에서 통용되는 경우들도 상당수 발생하면서 현실에서의 경제활동 중 가치교환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음이 논의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비트코인의 경우 처음부터 현실에서의 경제활동에 사용될 수 있도록 고안된 점에서 가상화폐로서 높은 평가를 받았던 린든 달러의 수준을 넘어서는 정교함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⁵⁾이다. 이는 기존에 논의되었던 게임 아이템 또는 게임내 사이버머니 수준에서의 논의를 넘어서는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사항이 된다. 특히 익명성을 중요시하는 암시장, 즉 블랙마켓에서는 더욱 중요한 거래수단이 될 수 있기에 각국 정부에서는 가상화폐와 관련한 공식 입장이 무엇인지 강요받기도 한다.

범죄에 활용된다는 불안과 변화의 큰 흐름에서 기회를 이용해야 한다는 실리 사이에서 합리적인 해결점을 생각해야 할 시점이기에 본 논문에서는 기술적으로 발전한 가상화폐, 특히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그 효용성과 그로 인한 사기, 도박, 탈세 및 테러 등 각종 범죄 발생의 가능성, 그리고 이에 대처할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고민해보고자 한다.

II. 가상화폐의 의의 및 국가별 정책현황

1. 가상화폐의 개념과 관련기술

가. 전자화폐와 가상화폐의 차이

가상화폐를 논하기에 앞서 예전부터 쓰였던 용어인 전자화폐와는 어떻게 구별해야 할지가 먼저 논란이 된다. 사실 요즘 쓰이는 가상화폐라는 용어에는 전자화폐와

4) 김태오, “가상화폐의 이용현황과 시사점: Bitcoin과 Linden Dollar를 중심으로”, 『지급결제와 정보기술』 제53호, 금융결제원 금융결제연구소, 2013.7., 50-54면 참조.

5) 정승영, “가상화폐(Virtual Currency)의 세법상 분류와 과세 -비트코인(Bitcoin) 사례를 중심으로-”, 조세학술논문집 제31집 제1호, 한국국세조세협회, 2015.02., 87면.

디지털화폐도 동일한 의미인 듯 쓰일 수 있다는 뉘앙스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실에서도 가치를 가지는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가 신용카드나 온라인 포인트 같은 전자화폐와도 같은 의미로 쓰일 수 있는지 혹은 완전히 분리해서 쓰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먼저 논해보고자 한다.

먼저 기존에 쓰이고 있던 전자화폐(digital cash, electronic cash)의 사전적 의미는, IC카드 또는 네트워크에 연결된 컴퓨터에 은행예금이나 돈 등이 전자적 방법으로 이전해 물품 또는 용역 구매시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새로운 지급결제수단이다. 기존의 지폐나 주화를 대체하는 새로운 개념의 전자적 결제 수단으로 1990년대 중반 유럽중앙은행(ECB), 국제결제은행(BIS) 등에서 사용되기 시작한 용어이다. 컴퓨터에 의해서만 확인이 가능하여 디지털 캐시(digital cash), 사이버 캐시(cyber cash), E-캐시 등으로 부르기도 한다. 전자화폐는 화폐적 가치가 어떻게 저장되었는가에 따라서 IC카드형과 네트워크형으로도 나뉜다. IC카드형 전자화폐는 전자지갑형 전자화폐라고 한다. IC카드에 전자적 방법으로 은행예금의 일부를 옮겨 단말기 등으로 현금처럼 지급하는 것이다. IC카드형 전자화폐는 네트워크형과 호환되지 않으면 전자상거래에서는 쓸 수 없다. 한편, 네트워크형 전자화폐는 가상은행이나 인터넷과 연결된 고객의 컴퓨터에 예치·저장하였다가 필요시 공중통신망을 통하여 대금결제에 사용하는 형태의 지급결제방식으로 다시 현금형, 신용카드형, 수표형으로 세분되기도 한다.⁶⁾ 스마트폰도 대중화되어 모바일 전자화폐의 기능도 확대되고 있고, 각종 포인트나 사이버머니가 현금화로 연동⁷⁾되는 상황이다.

그에 비해 가상화폐는, 전자화폐와 유사한 개념으로 출발하였지만 주로 게임 내의 통화를 지칭하기도 하다가 2009년 개발된 비트코인의 통용 이후에 빈번하게 쓰이게 된 용어이다. 가상화폐는 각국 정부나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일반 화폐와는 달리 처음 고안한 사람이 정한 규칙에 따라 가치가 매겨지고, 실제 화폐와 교환될 수 있음을 전제로 유통되는 것이 특징이다. 미국 재무부(Department of the Treasury) 산하 금융범죄단속반(Financial Crimes Enforcement Network; FinCEN)에서 발표

6) 네이버지식백과, “전자화폐[digital cash]”, NEW경제용어사전 참조.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782627&cid=42111&categoryId=42111>>

7) 네이버지식백과, “전자화폐[electronic cash, 電磁貨幣]”, 두산백과 참조.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67738&cid=40942&categoryId=32828>>

한 지침(Guidance)⁸⁾에서는 실제화폐와 가상화폐의 개념 차이를 설명하였는데, 실제화폐(real currency)는 “미국 또는 다른 국가에서 법적으로 정식 통화로 지정되고, 유통되며, 발행국가에서 관례적으로 사용되면서 교환 매체로 내부적으로 수용된 동전과 지폐”라고 하고 있고, 반대로 가상화폐(virtual currency)는 “어떠한 환경에서는 일반화폐처럼 교환 매체로 작용하지만, 실제화폐의 모든 특성을 가지지는 않고, 관할구역 내에서 법적으로 정식 통화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것”이라고 하면서도 금융범죄단속반의 지침에서 가리키는 가상화폐는 “교환할 수 있는(convertible)” 형태로서 실제화폐와 비슷한 가치를 가지거나, 실제화폐의 대체수단으로 작용하는 것을 가상화폐로 지칭한다고 하고 있다. 가상화폐는 화폐 발행에 따른 생산비용이 전혀 들지 않고 이체비용 등 거래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다. 또한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에 저장되기 때문에 보관비용이 들지 않고, 도난·분실의 우려가 없기 때문에 가치저장수단으로서의 기능도 뛰어나다⁹⁾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거래의 비밀성, 즉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마약 거래나 도박, 비지금 조성을 위한 돈세탁에 악용될 수 있고, 과세에 어려움이 생겨 탈세수단이 될 수도 있어 문제가 된다.

전자화폐를 국가에서 발행하거나 국가에서 최종적으로 책임지고 보증하는 법정화폐로, 가상화폐를 발생주체가 없는 화폐로 분류할 수 있다는 경우¹⁰⁾도 있는바, 따라서 가상화폐를 정의할 때에는 ① 발행주체가 국가가 아닐지라도 가상공간에서 발행되며, ②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의 암호화폐처럼 이를 사용하는 화폐사용자들 간에 강제로 통용되는 교환가치를 가지면서, ③ 린든 달러와 같은 가상게임에서의 통용화폐에서 더 나아가 실제화폐로의 현금화, 상용화가 가능한 화폐들을 특정하여

8)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Financial Crimes and Enforcement Network, Application of FinCEN's Regulations to Persons Administering, Exchanging, or Using Virtual Currencies (Regulatory Guidance, FIN-2013-G001,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March 18, 2013). [2017.04.14. 검색]

<<https://www.fincen.gov/resources/statutes-regulations/guidance/application-fincens-regulations-persons-administering>> 이하 'FinCEN의 가상화폐지침'이라 칭하고자 한다.

9) 네이버지식백과, “가상화폐”, 시사상식사전 참조.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968137&cid=43667&categoryId=43667>>

10) 이투데이 홍셋별기자, “[이철환의 돈이야기] 전자화폐와 가상화폐, 뭐가 다르지?”, 2016.12.14.자 기사 참조. [2017.04.19. 검색]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427135>>

칭하는 것이 분류함에 있어 편리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다만, 가상통화였던 대상이 국가의 사후승인 또는 강제통용성 구축으로 인하여 실제화폐와 비슷한 위치가 되거나 법정화폐로 지정이 되었더라도 이를 전자화폐의 개념에 편입시키는 것은 개념상 혼란이 있을 것이므로 자제해야 할 것이다.

나. 가상화폐의 대표주자, 비트코인

최근 가상화폐 중 대표적인 것으로 떠오르는 것은 단연 비트코인이다. 통용되고 있는 가상화폐의 대표적인 암호화 기술은 비트코인이 시작한 블록체인(Block Chain) 방식이다. 비트코인은 미국발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2008년에 ‘사토시 나카모토(Satoshi Nakamoto)’라는 이름의 프로그래머가 창안한 가상화폐이다. 해당인물이 실제 존재하는 인물인지 필명일 뿐인지에 관하여는 논란이 있다. 기존의 전자상거래에서 쓰였던 삼각구도(판매자-금융기관-구매자)에서의 거래가 아니라 Peer-to-Peer(P2P) 방식으로 당사자 간의 거래를 통해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 직접적 거래를 위해 사용되는 전자화폐 중 가장 대표적인 통화의 명칭¹¹⁾이다. 넓게는 인터넷 프로토콜이면서 ‘중개기관의 개입이 없는 형태의 전자적 P2P 지급네트워크’를 의미하고, 좁게는 ‘화폐 단위로 거래되는 디지털 가상화폐’를 말한다. 비트코인은 정부나 중앙은행, 금융기관 등의 개입 없이 거래가 되기에 개인과 개인이 간편하고 빠르게 거래를 할 수 있다. 이는 다른 전자화폐들과는 달리 쌍방향 가상화폐라고 하겠다. 비트코인으로 실제 물건을 구매할 수도 있고, 실물 화폐도 구매할 수도 있으며,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도 있다. 이러한 점에서 기존 전자화폐들과 차별성이 있다. 특히 2009년은 미국 중앙은행(Fed)이 막대한 양의 달러를 찍어내 시장에 공급하는 양적완화가 시작된 해인데, 달러화 가치 하락 우려가 겹치면서 비트코인이 대안 화폐로 주목받았다.

비트코인은 1단위의 Bitcoin을 1BTC로 표시하며, 0.01BTC는 1cBTC, 즉 1centbitcoin이 된다. 0.001BTC는 1mBTC, 즉 1millibitcoin이 되고, 0.000001BTC는 1 μ BTC, 즉 1microbitcoin 또는 1bits가 된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십

11) 네이버캐스트, “[용어로 보는 IT] 분산된 공개장부, 세상을 바꾼다. 블록체인(Block chain)”, 블로터 기사 참조.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3578241&cid=59088&categoryId=59096>>

진수 스케일의 단위로 사용된다. 최소단위는 0.00000001BTC이며, 1satoshi라고도 한다. 여기서 satoshi라는 단위명은 비트코인 프로토콜을 최초로 고안해낸 논문의 저자인 ‘사토시 나카모토(Satoshi Nakamoto)’를 기리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한다. 이렇게 최소단위를 소수점 8자리까지 분할할 수 있어 비트코인은 필요에 따라 통화량을 늘릴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았다고 볼 수 있다.

다. 비트코인의 생성과 저장

비트코인은 뚜렷한 발행기관이 없는 것이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다. 비트코인에 대한 발행과 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이 특별히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채굴(mining)이라고 하는 행위로 얻어내야 한다. 비트코인을 얻기 위해서는 우선 비트코인을 담을 지갑(wallet)을 생성해야 하는데, 지갑은 비트코인을 보관하면서 비트코인을 거래하는 프로그램으로 보면 된다. 은행을 거치지 않고 개인과 개인이 직접 돈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분산화된 거래장부’ 방식을 도입한 것이 핵심으로서, 시스템상에서 거래가 이루어질 때마다 공개된 장부에는 새로운 기록이 추가된다. 이를 ‘블록체인(Block Chain)’¹²⁾이라고 한다. 이는 프로그램 설치방식 또는 웹서비스 방식의 지갑(wallet)을 기반으로 하며, 지갑의 형태로는 소프트웨어 형태의 지갑, 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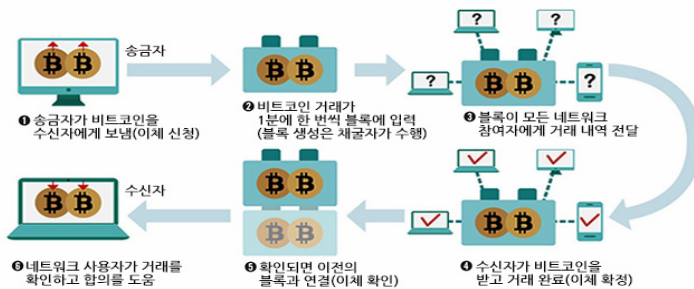
12) 블록체인이란, 공공 거래 장부라고도 부르며 가상화폐로 거래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해킹을 막는 기술이다. 기존 금융회사들은 중앙 집중형 서버에 거래 기록을 보관하는 반면, 블록체인은 거래에 참여하는 모든 사용자에게 거래 내역을 보내 주며 거래 때마다 이를 대조해 데이터 위조를 막는 방식을 사용한다. 누적된 거래 내역 정보가 특정 금융회사의 서버에 집중되지 않고 온라인 네트워크 참여자의 컴퓨터에 똑같이 저장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블록체인은 대표적인 온라인가상화폐인 비트코인에 적용되어 있다. 비트코인은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장부에 거래 내역을 투명하게 기록하며, 비트코인을 사용하는 여러 컴퓨터가 10분에 한 번씩 이 기록을 검증하여 해킹을 막는다. 처음에는 비트코인의 거래를 위한 보안 기술로 활용됐다. 비트코인은 한때 미래 화폐로 각광받았으나 2014년 대형 거래 중개업체였던 ‘마운트곡스’가 석연찮은 이유로 파산 보호를 신청하면서 인기가 잠깐 시들해졌다. 추가적인 거래가 일어나면 각 참여자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장부 자체가 인터넷상에 개방돼 있고 수시로 검증이 이뤄지기 때문에 해킹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다만 블록체인 기술은 비트코인처럼 특허가 없는 오픈소스로 제공되는 데다 활용가치가 적지 않아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블록체인을 활용하면 고객 데이터베이스 유지 보수와 보안에 따른 막대한 비용을 줄일 수 있어 세계적 금융회사들이 이 기술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네이버지식백과, “블록체인 [blockchain security technology]”, 시사상식사전/환경 경제용어사전 참조.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838482&cid=43667&categoryId=43667>>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723988&cid=42107&categoryId=42107>>

바일폰 형태의 지갑 등으로도 분류한다. 비트코인의 주요 거래절차를 요약하면, ① 지갑설치 및 주소생성, ② 송금지시, ③ 송금지시 발송, ④ 송금지시 검증, ⑤ 블록 생성 및 배포, ⑥ 블록체인 생성 및 공유의 단계를 거쳐 거래가 이루어진다. 컴퓨터와 인터넷만 되면 누구나 비트코인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송금자와 수신자 사이의 거래절차를 보기 쉽게 설명한 내용은 아래의 그림과 같다.

〈그림 1〉 비트코인의 거래 절차¹³⁾



검증에는 송금액 검증과 거래내역에 포함된 전자서명 값(scriptSig)을 확인하는 송신자 및 거래내역 검증이 있는데,¹⁴⁾ 검증을 마친 채굴자 중 채굴에 성공한 채굴자는 자신이 검증한 거래내역을 포함하는 블록을 생성하게 된다. 생성한 블록헤더에는 난스(nonce)¹⁵⁾, 타임스탬프(Timestamp), 이전 블록의 헤더에 대한 해시 값(Hash of Previous Block Header), 생성된 블록에 포함될 거래내역 집합의 해시 값(Root Hash) 등이 포함된다.

채굴에 이용되는 컴퓨터는 암호화 해시(hash) 함수를 계산할 수 있도록 설정되어 있는데, 해시함수는 입력값으로부터 고정된 길이(68 characters)의 해시 값을 생성한다. 입력값

13) 네이버캐스트, “[물리산책] 거래장부 공유해 금융의 장 새로 쓴다, 블록체인”, 과학동아 참조.
http://navercast.naver.com/contents.nhn?rid=20&contents_id=131378

14) 이혁준·이수미, “비트코인의 신뢰구조와 이중지불의 위험”, 정보보호학회지 제26권 제2호, 한국정보보호학회, 2016.4., 26면.

15) 전주용·여은정, “비트코인의 이해-금융경제학적 관점에서”, Korea Business Review 제18권 4호, 한국경영학회, 2014.11., 214면. 난스(nounce)는 4바이트(byte)의 임의값(3820130470 등의 형태)을 말한다.

이 극히 일부만 바뀌어도 해시 값은 크게 바뀌며, 체계적인 방식으로 해시함수의 역함수를 구함으로써 해시 값으로부터 입력값을 알아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결국 비트코인 시스템에서 비트코인을 얻는다는 것은 컴퓨팅과와와 전기에너지를 소모해야 하는 채굴자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보상 차원에서 채굴자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해시 값을 찾아낼 확률은 오직 해시 함수를 풀어내는데 이용되었던 누적된 컴퓨팅과와에만 의존하게 되는 것이고, 채굴자는 비트코인을 팔아서 이익을 남길 수 있다지만, 채굴자 간에 경쟁이 치열해지거나 비트코인 가격이 폭락하면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

현재 시점에서는 한 사람이 비트코인을 얻기 위해서 아무리 성능이 좋은 개인PC를 구비하더라도 채굴하기가 불가능할 만큼 복잡한 함수 풀이과정이 필요하게 되었다. 비트코인이 처음 등장했던 시절과 달리 현재는 서버 수준이 아닌 개인PC의 성능으로는 복잡한 함수를 풀어내어 비트코인을 얻어내기 힘들고, 얻어낸다고 하더라도 매우 작은 단위만을 얻어낼 수 있을 뿐이다. 지금까지 절반 이상의 비트코인이 채굴되었으며, 점점 채굴의 난이도가 올라가고 있다. 이에 따라 서버 수준의 워크스테이션을 갖춘 채굴전문가나 기업이 등장하게 되었고,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거래할 수 있는 중개거래사이트¹⁶⁾도 등장하게 된 것이다.

라. 비트코인 시세의 변동

2009년 처음 비트코인이 출시되고서 채굴되었을 당시의 추정시세는 1BTC에 0.0008USD 수준이었지만, 2012년 초반에 비트코인의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1BTC에 10USD 선으로 거래 시세가 상승하였다. 이후 비트코인은 급격하게 가치가 상승

16) 국내의 대표적인 가상화폐 거래소 사이트는 코빗(www.korbit.co.kr), 빗썸(www.bithumb.com), 코인이즈(www.coinis.co.kr), 코인플러그(www.coinplug.com), 코인피아(www.coinpia.com) 등이 있다. 미국에서는 샌프란시스코에 크라켄(www.kraken.com), 코인베이스(www.coinbase.com)가 있고, 뉴욕에 아이티비트(www.itbit.com)가 있다. 유럽에서는 이탈리아에 비트피넥스(www.bitfinex.com), 독일에 비트코인데(www.bitcoin.de), 슬로베니아에 비트스탬프(nl.bitstamp.net), 그리스에 비티씨그리스(www.btgreece.com), 핀란드에 로컬비트코인(localbitcoins.com)이 있다. 남미 브라질에서는 메카도 비트코인이 있으며, 동남아에서는 비트코인베트남, 코인스필리핀, 비트코인 인도네시아 등 다수의 거래소 사이트가 존재한다. 호주, 인도, 싱가포르, 홍콩에서의 대표적인 거래소는 비트앤젯(www.bitnz.com)이다. 가까운 일본에서의 거래소는 비티씨박스(www.btcbox.co.jp), 코인체크(www.coincheck.jp)가 있고, 중국에는 베이징에 후비(www.huobi.com), 상하이에 비티씨차이나(www.btcc.com), 그리고 동남아권역까지 범위를 가지는 OK코인(www.okcoin.com)이 존재한다.

하고 있고, 2017년 3월 기준으로는 1BTC에 1,290USD(약 149만 원) 정도까지 시세가 올라갔다. 2017년 3월 3일을 기준으로, 국제 금 거래시세는 1 트로이온스(1troy-ounce = 31.1035g)당 1,225.50USD(약 141만 원)¹⁷⁾ 비트코인보다 약 65달러 낮게 형성되어 있다. 금이 가지는 현물시세보다 비트코인의 교환가치가 높다는 것은 비트코인이 실물화폐와 다르다는 것을 나타낸다. 중앙은행과 정부의 통화 정책에 따라 공급량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총 발행액이 정해진 상태에서 철저하게 온라인상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 가격이 변동하기 때문이다. 비트코인의 가격이 오르자 재테크 수단으로 떠올랐지만, 숫자로만 기록되는 비트코인의 가격을 실제로 만질 수 있는 금과 비교하는 것은 무리일 수도 있다. 그러나 비트코인이 금 값보다 비싸졌다는 소식이 퍼지면서 가상화폐의 투자가치가 다시 조명을 받기 시작했다. 비트코인 외에도 후속으로 비슷한 기술형태의 가상화폐들이 등장하였는데, 라이트코인(Litecoin), 피어코인(PPcoin), 에머코인(Emercoin), 네임코인(Namecoin), 이더리움(Ethereum), 리플코인(Ripple) 등이 있다. 세계에서 가장 거래량이 많은 가상화폐는 단연 비트코인이고, 그 뒤로 이더리움, 리플코인, 대쉬, 라이트코인 순으로 거래량 순위가 형성¹⁸⁾되어 있다. 비트코인 개발 이후 조금씩 다른 기술이 접목되면서 코인별로 다른 특징이 나타난다.

앞서 밝힌 바대로 비트코인의 총 발행량은 2,100만 개로 정해져 있다. 현재도 10분마다 25개의 새로운 비트코인이 시스템에 추가되지만 21만 개가 발행될 때마다 반감되어 앞으로 10분당 추가되는 비트코인은 12.5개 → 6.25개 → ... 방식으로 절반씩 줄다가 0개로 수렴¹⁹⁾하게 된다. 이는 중앙은행이 재량적으로 통화공급량을 조절하면 안 된다는 미국의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 주장과도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다. 결국 화폐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는 단순한 시장원리를 표방하는 것이다.

17) 이코노미조선, “가상화폐 비트코인, 금값 추월하며 역대 최고가 경신 공급 부족해 가격 상승, 테러·범죄 악용 우려도”, 2017.03.20.자 기사 참조. [2017.03.27. 검색]

<[18\) 가상화폐순위사이트 코인마켓캡 <\[19\\) 네이버 지식백과, “비트코인”, 한경 경제용어사전 참조.\]\(http://coinmarketcap.com/1></p>
</div>
<div data-bbox=\)](http://economychosun.com/special/special_view_past.php?boardName=C08&t_num=11413&img_ho=></p>
</div>
<div data-bbox=)

<

2. 가상화폐에 대한 국가별 정책현황

비트코인은 위에서 언급한 특성상 통화관리주체가 없으며, 정부가 통제할 수도 없는 화폐이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비트코인을 이용한 무기, 마약거래 등의 불법적인 거래 소지가 있고, 또한 익명성을 바탕으로 투기까지도 가능하기에 각 나라 정부 입장에서는 부정적인 입장이 많다. 그러나 비트코인은 핀테크 산업을 활성화하는 기술 중에서 핵심요소로 평가²⁰⁾되었기 때문에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비트코인에 대해 우호적인 입장을 견지하며 서둘러 관련 정책을 마련하는 실정이다.

〈표 1〉 각국의 비트코인 규제현황²¹⁾

규 제 대 상	해당 국가	규 제 내 용
원칙적 금지	중국	• 은행/지급시스템 비트코인 사용금지, 개인들 자유거래 가능
	러시아	• 자연인, 법인 등은 비트코인을 사용할 수 없음
	아이슬란드	• 비트코인을 이용한 외환거래행위는 원칙적 금지
ATM 사용 금지	타이완	• 비트코인 ATM은 승인이 필요
자금세탁, 불법금융 등 사용 금지	싱가포르	• 금융중개기관은 고객 정보를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거래는 보고할 의무 부담
	미국	• 비트코인 거래소 및 채굴자들은 연방정부에 의심사항 보고의무를 부담
비트코인 과세		• 실제 상거래에서 지급을 위한 비트코인의 사용, 교환 등은 과세상이 될 수 있음
	일본	• 비트코인 거래·구매로 인한 수익에 대해서 과세 • 2017년 4월 자금결제법 개정으로 금융권 거래승인
	핀란드	• 다른 통화로 교환되면서 발생한 자본이익에 과세
	독일	• 채굴이나 거래로 인한 자본이익에 대해서 과세 (1년 이상 보유시 예외적 면세)
특별한 규정 없음 (원칙적 자유)	대한민국	• 비트코인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음 • 비트코인 거래소들이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음

20) 정유신·구대언, 『핀테크, 기회를 잡아라(돈의 흐름을 바꾸는 금융대혁명)』, 한국경제신문사, 2015, 22-23면 참조.

21) 김홍기, “최근 디지털 가상화폐 거래의 법적 쟁점과 운용방안”, 증권법연구 제15권 3호, 한국증권법학회, 2014.12., 404면 <표 1>; 유럽의회연구보고서(EPRS) 9면 참조.

가. 미 국

미국에서는 별도의 비트코인 규제법규를 두지 않고 개별 기관들이 그 관할영역에서 권한행사 여부를 검토 중인 상황이다. 지금까지 미국 정부는 비트코인과 관련하여 주로 자금세탁 및 미인가자금 이체에 관심을 두어 왔다. 2013년 5월에 미국 정부는 당시 세계 최대의 비트코인 거래소인 마운트곡스(Mt. Gox)가 자금이체서비스 업무에 종사하면서도 FinCEN에 자금서비스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당 회사의 계좌로부터 500만 달러를 압류²²⁾하였다. 그 후 2014년 1월에는 미국 연방정부는 Bitinstant의 CEO인 Charlie Schrem을 자금세탁, 미인가 자금이체, FinCEN에 대한 의심거래행위보고의 고의적 누락 등의 혐의로 체포했다. 구체적으로는 익명성 온라인 블랙마켓인 실크로드(Silkroad)²³⁾에서 비트코인을 사용할 수 있도록 비트코인 재매매업자가 달러를 교환하는 것을 도왔다는 혐의²⁴⁾이다.

미국 재무부의 금융범죄단속반(FinCEN)은 실크로드 사건 이후인 2014년 3월에 가상화폐 규제를 위한 ‘금융범죄단속반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는데, 가상화폐 이용자(users) 및 관리자 또는 환전상(administrator or exchanger) 등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정의하면서, 관리에게 자금이체업무를 수행할 경우 FinCEN에 자금서비스업(money services business)을 등록할 의무를 부여하고, 고객이해규정(know your customer)을 준수하며, 엄격한 반자금세탁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의심거래행위보고

22) Jerry Brito, Houman Shadab, Andrea Castillo, *Bitcoin Financial Regulation: Securities, Derivatives, Prediction Market & Gambling*, Social Science Research Network, working papers series, Draft of August 10, 2014, at 10.

23) 실크로드(Silk Road)는 마약 등 불법물품을 판매 및 경영하고 있던 암시장 웹사이트였다. Ross William Ulbricht가 운영하던 웹사이트로, 마리화나, LSD, 헤로인, 코카인 등 금지약물을 판매하고 있었다. 약물뿐만 아니라, 악성코드, 불법콘텐츠, 도난계정, 신용카드정보, 해킹기술도 판매하고 있었다. 다크웹을 이용하여, 일반 인터넷에서 액세스할 수 없었으며, Tor를 통해서만 이용할 수 있다. 2013년 7월까지 95만 7079명의 이용자가 있었으며 미국 달러 대신 비트코인으로만 거래할 수 있었다. 2013년 7월 미국 연방수사국은 실크로드 서버에 액세스를 성공하였고, 같은 해 10월 서버를 압수하였으며 소유자 로스 윌리엄 울브릭트를 체포했다. 위키피디아, “실크로드(웹사이트)” <[https://ko.wikipedia.org/wiki/%EC%8B%A4%ED%81%AC_%EB%A1%9C%EB%93%9C_\(%EC%9B%B9%EC%82%AC%EC%9D%B4%ED%8A%B8\)](https://ko.wikipedia.org/wiki/%EC%8B%A4%ED%81%AC_%EB%A1%9C%EB%93%9C_(%EC%9B%B9%EC%82%AC%EC%9D%B4%ED%8A%B8))>

24) Charlie Schrem에 대한 공소장(Sealed Complaint) 사본은 아래 주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justice.gov/sites/default/files/usao-sdny/legacy/2015/03/25/Faiella,%20Robert%20M.%20and%20Charlie%20Shrem%20Complaint.pdf>>

(Suspicious Activity Report; SAR)를 권고²⁵⁾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FinCEN은 2014년 1월 30일 가상화폐 채굴절차에 관한 규정,²⁶⁾ 가상화폐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특정한 투자활동에 관한 규정²⁷⁾을 공포하였다. 그러나 FinCEN은 가이드라인에서 적용제외의 근거도 제시하고 있는데,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는 일정한 환경 하에서는 화폐처럼 작동하지만, 진정한 화폐의 측면을 모두 가지고 있지 않다²⁸⁾고 보았기 때문이다. FinCEN은 자금서비스영업규정에서 밝히기를, 전환가능 가상화폐를 송금하거나 또는 전환가능 가상화폐를 실제 화폐로 교환하는 회사만이 규제 대상에 포함되며, 전환불능 가상화폐를 거래하거나, 가상화폐를 사용하지만 송금하지 않거나, 전환가능 가상화폐를 교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규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나. 유럽

1) 유럽연합(EU)

유럽연합(EU)에서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별도의 규제를 하지는 않는다. 유럽중앙은행(European Central Bank; ECB)은 2012년에 발간한 보고서에서 중앙은행의 관점에서 볼 때 가상화폐는 유동성 등 실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며, 비트코인은 전자화폐지침(Electronic Money Directive)과 지급·결제지침(Payment Service Directive)의 규제대상 밖에 있다고 하였다. 2013년 12월에는 유럽 은행감독청(European Banking Authority; EBA)이 암호화폐의 사용으로 인한 위험과 법적 보호장치의 부족을 금융소비자들에게 경고했고, 비트코인 화폐가치의 안정성에 대

25) 가이드라인은 가상화폐를 전자화폐 및 전자귀금속(E-Currencies and E-Precious Metals), 중앙기관 개입형 가상화폐(Centralized Virtual Currencies), 분산형 가상화폐(De-Centralized Virtual Currencies) 등으로 세분화하여 각각 가상화폐 형태별로 규제방안을 마련하였다.

26) FinCEN, Application of FinCEN's Regulations to Virtual Currency Mining Operations, FIN-2014-R001, January 30, 2014. [2017.04.14. 검색]
<http://www.fincen.gov/news_room/rp/rulings/pdf/FIN-2014-R001.pdf>

27) FinCEN, Application of FinCEN's Regulations to Virtual Currency Software Development and Certain Investment Activity, FIN-2014-R002, January 30, 2014. [2017.04.14. 검색]
<http://www.fincen.gov/news_room/rp/rulings/pdf/FIN-2014-R002.pdf>

28) FinCEN의 가상화폐지침(Guidance), "Currency vs. Virtual Currency", p.1

해서도 보장할 수 없다고 하였다. 암호화폐는 그 법적인 불확실성 때문에 범죄자, 자금세탁자 등에 의해 사용될 수 있음을 경고²⁹⁾하였다. 2014년 3월에는 비트코인 관련이슈를 유럽연합의 의제(agenda)로 상정하려는 최초의 시도가 있었다. 전문가들은 별도의 비트코인 규정을 두기보다는 기존의 지급 및 전자화폐 프레임워크와 반자금세탁규정들을 확장하여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제안하고 있다. 2014년 2월에 이탈리아의 Sergio Silvestris는 비트코인 문제 해결을 위한 결의요청서(Motion for a European Parliament Resolution on Bitcoin)³⁰⁾에서 위원회에 비트코인의 긍정적 및 부정적 측면을 평가할 것을 요청했다.

2) 독 일

독일의 금융감독청(Bundesanstalt für Finanzdienstleistungsaufsicht; BaFin)은 2013년 7월 독일 은행법(Gesetz über das Kreditwesen)에 있는 금융상품의 개념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수정하여 비트코인을 금융상품 또는 독일 지급서비스법(Gesetz über die Beaufsichtigung von Zahlungsdiensten; ZAG)에 의한 계좌의 단위로 규정³¹⁾하였다. 이에 따라 독일은 비트코인의 법적 성격을 명확하게 규정한 최초의 국가가 되었지만, 비트코인 업체들은 금융기관에 준하는 강력한 규제를 받게 되었다. 독일 소재 비트코인 거래소인 Bitcoin.de(www.bitcoin.de)는 연방금융감독기구로부터 금융중개기관의 허가를 받고서 독일 뮌헨 소재 피도르 은행(Fidor Bank)과 제휴 협정을 체결하고, 고객들은 은행이 제공하는 계좌를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비트코인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매매를 할 수 있게 되었다³²⁾고 하는바, 이는 가상화폐와 관련

29) 김흥기, 앞의 논문, 401면. 유럽중앙은행(ECB)은 최근에 암호화폐에 대한 투기적인 투자와 소비자보호장치의 부족을 경고한 바 있다. 다수국가의 중앙은행들, 즉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인도 등의 중앙은행들이 비슷한 경고를 하였다.

30) Political Press, Motion for a resolution on Bitcoin—B7-2014-0168, Feb. 4, 2014. [2017.04.15. 검색] <<http://www.europarl.europa.eu/sides/getDoc.do?pubRef=-//EP//NON SGML+MOTION+B7-2014-0168+0+DOC+PDF+V0//EN>>

31) Winheller, Finanzaufsichtsrecht(BaFin-Lizenz) > Unternehmen außerhalb des klassischen Banksektors: Zahlungsdienstaufsichtsgesetz, E-Geld, Bitcoins etc. [2017.04.19. 검색] <<https://www.winheller.com/bankrecht-finanzrecht/aufsichtsrecht-bafin-lizenz.html>>

32) CoinDesk, *Marketplace Bitcoin.de registers with Germany's financial regulator BaFin*, July 31, 2013. [2017.04.18. 검색]

한 사업을 보다 자유롭고 넓게 확장할 수 있는 첫걸음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일단 가상화폐를 금융규제의 테두리 안에 둘 수 있게 되면서 그 거래에 대한 과세가 가능해졌는데, 비트코인 형태의 금융상품을 1년 미만으로 보유하다가 거래를 통해 시세차익을 실현한 사람에게는 해당 차익의 25%의 자본이득세가 부과³³⁾된다.

다. 일 본

세계 최대의 비트코인 거래소였던 일본의 마운트곡스(Mt. Gox)가 2014년 2월 26일 도쿄지방법원에 파산신청을 하여 파산 이후인 2014년 3월경 일본 정부는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규제방침을 발표하면서, 비트코인 과세를 비롯하여 전반적인 가이드라인 마련을 밝혔었다. 일본 정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의 초안에서는 가상화폐를 화폐나 금융상품으로 보아 엄격하게 규제한다기보다는 귀금속 등과 같은 일반상품 또는 선물거래 대상상품(commodity)으로 취급하기를 선호³⁴⁾하는 듯하였다. 다만, 화폐는 일반적으로 신뢰성과 안정성 확보가 중요함에도 비트코인은 출자법, 은행법 및 자금결제법, 범죄수익이전방지법 등 기존의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 사각지대에 있기에³⁵⁾ 마운트곡스(Mt. Gox) 사건을 기점으로 가상화폐는 위험하다는 인식에 따라 담당기관 및 규제법규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³⁶⁾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최근에는 일본 정부의 정책방향이 진흥 쪽으로 바뀐 듯하다. 한참 이슈가 되었을 당시에는 매매차익이 발생하면 금융소득세를 부과하는 등의 자본이익과세 움직임을 보였던 적이 있으나, 최근에는 세계적으로 가상화폐를 교환매체로 인정하

<<http://www.coindesk.com/bitcoin-de-registers-with-germanys-financial-regulator-bafin/>>

33) 이동규, 『비트코인의 현황 및 시사점』,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2013, 19면.

34) The Wall Street Journal, *Japan Says Bitcoin Not a Currency*, March 6, 2014.

<<https://www.wsj.com/articles/japan-says-bitcoin-not-a-currency-1394153509>>;

The Guardian, *Japan issues guidelines on bitcoin taxation*, March 7, 2014. [2017.04.27. 검색]

<<https://www.theguardian.com/technology/2014/mar/07/japan-issues-guidelines-on-bitcoin-taxation>>

35) 이현정, “가상화폐의 금융법 규제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비트코인을 중심으로-”, 『과학기술법연구』 제21권 제3호(2015), 373면; 福田政之, “ビットコインなど仮想通貨の米国における法規制の動向と日本法への示唆”, NBL No.1027(2014. 6. 15), 53면 이하 참조.

36) 맹수석, “일본의 자금결제제도의 최근 규제 동향과 시사점”, 비교사법 제23권 제2호(통권 3호), 2016.5., 445면; 福田政之, “ビットコインなど仮想通貨の米国における法規制の動向と日本法への示唆”, NBL No.1027(2014. 6. 15), 53면.

려는 움직임에 편승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영국·독일·EU·미국 등 세계적으로 가상화폐를 법정화폐로 인정하는 가운데 일본은 최근 개정된 자금결제에 관한 법률³⁷⁾이 2017년 4월부터 발효되어 가상화폐가 금융권 활용이 가능해지면서 법정화폐로 인정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변화의 흐름에 동참하게 되었다. 일본은 대표적인 가상화폐인 ‘비트코인’ 거래량이 많은 국가 가운데 하나로, 최근 중국이 비트코인 규제를 강화하면서 일본에서의 거래가 더 급증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³⁸⁾ 이에 따라 앞으로 일본 기업들에게는 성장의 활로가 더 크게 열려 주식시장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가상 통화를 통한 거래가 쉽게 이뤄지면 기업들의 클라우드펀딩 등 인터넷을 통한 자금 조달도 활성화될 것이다.

비트코인·리플코인·라이트코인 등 일본의 가상통화 시장규모는 2015년 1850억 엔(약 1조 8500억 원)에서 2020년 1조 엔(약 10조 31억 원)으로 성장할 전망이라고 하는데, 커지는 시장규모에 맞추어 개정된 자금결제법에 따라 일본 금융청(FSA)은 관련 감독기관으로 나서 가상 통화 거래소를 검사하고 필요에 따라 행정명령을 통한 규제를 가하게 되며, 일본블록체인협회(JBA)와 블록체인추진협회(BCCC) 등 가상 통화 관련 협회도 가동된다³⁹⁾고 한다. 미쓰비시 도쿄(三菱東京)UFJ은행 등은 행권에서도 독자적인 가상화폐를 정식으로 발행할 것으로 보인다.

라. 중 국

최근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의 앞날이 밝지 않다는 일부 의견이 있는데, 이러한 의견의 근거 가운데 가장 큰 이유이자 리스크로 대두되는 것은 비트코인의 ‘큰손’인 중국이 외환 유출을 막기 위해 비트코인 거래를 규제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중국은 한때 전 세계 비트코인 거래의 90% 이상을 차지했을 만큼 비트코인 거래 대국이었다. 주식처럼 비트코인만 매매하는 전업 개인투자자도 있을 정도였고, 부유

37) 資金決済に関する法律 [改正 平成二八(2016)・五・二五, 施行 平成二九(2017)・四・一]

38) 아시아투데이 김예진기자, “가상 통화 법적 화폐로 인정하는 일본…“기업·주식시장에 순풍 전망””, 2017.03.30.자 기사 참조. [2017.04.20. 검색]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70330010019991>>

39) 아시아투데이 김예진기자, 앞의 기사 참조. [2017.04.20. 검색]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70330010019991>>

층이 자금을 눈에 띄지 않게 해외로 유출하는 목적으로도 쓰였다. 한참 외환보유액이 줄어드는 시기에 중국 당국은 자금 유출을 막기 위해 해외 송금 한도를 제한했는데, 중국 내에서는 현금 대신 비트코인으로 우회하는 방식을 택해 해외로 자금을 이전하는 행위가 빈번해졌다. 위안화를 금융기관을 통해 바로 달러화로 환전하는 것과 달리 비트코인을 거친 뒤 달러화로 환전하면 익명성 때문에 당국의 규제를 피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자금 유출이 계속되자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2017년 1월 중국 3대 비트코인 거래소인 BTC 차이나, 화비(火幣), OK코인 등에 대해 외환 관리와 자금세탁방지, 교환거래 규정준수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위법 사실을 적발했는데, 기관이나 개인 모두 비트코인 거래소의 잠재적 리스크를 예의 주시해야 한다⁴⁰⁾고 밝히고 있다. 인민은행은 조만간 비트코인 거래소들이 고객 신원을 확인하고 은행에 적용되는 규제를 따르도록 강제할 방침이다.

Ⅲ. 가상화폐를 이용한 관련범죄의 문제

1. 온라인 사기

가. 예측계약의 발생과 온라인사기 가능성

온라인사기는 보통 일상생활에서의 사기와 맞물려 진행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형법상 일반 사기죄로 사법처리가 가능하지만, 이른바 예측계약이라는 방식으로 발생하는 온라인에서만 사기행위가 형사법적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예측계약(prediction contract)은 서로 다른 결과가 발생하는 미래의 사건을 특정하고, 계약의 만기일에는 발생한 결과에 따라서 지급이 이루어지는 계약⁴¹⁾을 말하는데, 이는 사행성의 성격을 함께 가지는 것으로 엄격하게 규제되는 방식이다.

40) 이코노미조선, 앞의 기사 참조. [2017.03.27. 검색]

<http://economychosun.com/special/special_view_past.php?boardName=C08&t_num=11413&img_ho=>

41) 김홍기, 앞의 논문, 419면.

예측시장은 이러한 예측계약들이 이루어지는 시장이다. 예측시장은 특정한 현상이나 거래에서의 가격을 명백하게 밝히기 위한 목적에서 형성⁴²⁾된다. 예측시장에서 형성되는 물품의 가격은 특정한 사건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시장의 전체적인 예측을 나타낸다. 하지만 위험도가 크기 때문에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다.

강한 규제가 작용하는 예측시장의 환경에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의 이용자들은 규제를 위한 세트포인트로서의 중개기관 개입 없이 자신들의 보유 화폐로 직접 예측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된다. 익명성에 따라 자금의 출처를 파악하기 곤란하므로 예측계약을 맺고 계약의 만기일에 지급할 금액을 배당하는 방식이다. 예측시장에서 형성되는 물품의 가격은 특정한 사건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시장의 전체적인 예측을 나타낸다. 선거를 비롯하여 상품판매수치, 질병의 발생경향, 그 밖의 사항들을 예측하기 위해 사용되며, 여론조사 등 다른 예측방법보다 정확하다. 이러한 점 때문에 자연재해의 발생가능성이나 IPO가격의 예측, 가계부채의 상승가능성 등을 포함한 사회적 현상 분석에 예측계약이 유용하게 쓰일 수도 있다. 하지만 사건의 현재성이 없다는 점에서 위험도가 크기 때문에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다.

나. 미국 규제당국의 입장

미국의 규제당국은 예측계약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이다. 2012년에 미국 선물거래 위원회(Commodity Futures Trading Commission; CFTC)는 장외옵션거래 금지(ban on off-exchange options trading)에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예측시장을 고발하기도 하였는데, CFTC의 집행부문 이사인 David Meister는 “비록 예측계약으로 불리더라도, CFTC에 등록된 거래 또는 거래대상으로 명시되지 않거나 혹은 법적으로 면제대상이 아니라면, 그러한 선물옵션을 사거나 파는 것을 미국 시민에게 청하는 것은 위법”⁴³⁾이라고 하였다. 또한 CFTC는 2012년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의 결과에 대해

42) Adam Ozimek, *The Regulation and Value of Prediction Markets*, Mercatus Center Working Paper, March 12, 2014. [2017.04.17. 검색]

<http://mercatus.org/sites/default/files/Ozimek_PredictionMarkets_v1.pdf>

43) CFTC, CFTC Charges Ireland-Based “Prediction Market” Proprietors Intrade and TEN with Violating the CFTC’s Off-Exchange Options Trading Ban and Filing False Forms with the CFTC, CFTC Press Release, November 26, 2012. [2017.04.14. 검색]

서 거래자들이 베팅을 하는 정치적 사항에 대한 ‘이원옵션(binary option)’⁴⁴⁾을 정규 거래 나스닥에 상장하자는 제안을 거절⁴⁵⁾하면서, “해당 계약은 사행성이 있고, 공공의 이익에 반하며, 청산이나 거래를 위해서 상장될 수 없다”⁴⁶⁾라고 하였다.

미국에서 유일하게 운영되는 적법한 예측시장은 아이오와 티플 경영대학이 운영하는 아이오와 전자마켓(Iowa Electronic Market)⁴⁷⁾이라고 하는데, 영업활동은 하지 않고 학문적 연구만을 조건으로 허용⁴⁸⁾되고 있다. 미국의 통신법(The Wire Act)⁴⁹⁾은 스포츠 이벤트에 베팅하거나, 이를 이용하는 통신정보의 사용을 금지⁵⁰⁾하는 상황이고, 불법도박영업금지법(Illegal Gambling Business Act)⁵¹⁾은 주(州)법 하에

<<http://www.cftc.gov/PressRoom/PressReleases/pr6423-12>>

- 44) 디지털(digital) 옵션이라고도 하는 이원옵션(binary option)은 기초자산 가격이 옵션계약 당사자 간에 정한 수준이 되면 미리 정해진 이익을 얻고, 기초자산 가격이 미리 정해진 가격 이상으로 상승하더라도 정해진 수준 이상의 이익을 얻을 수 없는 옵션거래의 유형이다. 반면, 기초자산 가격이 설정된 가격 이하일 경우에는 이익이 상실된다. 디지털이 0 아니면 1인 것처럼 투자자는 이익의 전부 또는 전부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디지털 옵션이라 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디지털옵션”, 매일경제 참조.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9964&cid=43659&categoryId=43659>>

- 45) FT, *CFTC bans election-based derivatives contracts*, April 3, 2012. [2017.04.17. 검색]
<<http://www.ft.com/cms/s/0/def08b92-2a70-11e1-9bdb-00144feabdc0.html#axzz3Dvru0ZbP>>
- 46) CFTC Issues Order Prohibiting North American Derivatives Exchange’s Political Event Derivatives Contracts, CFTC Press Release, April 2, 2012. [2017.04.17. 검색]
<<http://www.cftc.gov/PressRoom/PressReleases/pr6224-12>>
- 47) Paul Gomme, *Iowa Electronic Markets*, Federal Reserve Bank of Cleveland Report, April 15, 2003. [2017.04.17. 검색]
<<http://www.clevelandfed.org/research/commentary/2003/0415.pdf>>
- 48) Andrea M. Cocoran, CFTC Letter to Professor George Neumann, CFTC Letter No. 91-04a, Division of Trading and Markets, February 5, 1992. [2017.04.17. 검색]
<<http://www.cftc.gov/ucm/groups/public/@Irlettergeneral/documents/letter/92-04a.pdf>> ;
Andrea M. Cocoran, CFTC Letter to Professor George Neumann, CFTC Letter No. rf05—003, Division of Trading and Markets, June 18, 1993. [2017.04.17. 검색]
<<http://www.cftc.gov/files/foia/repfoia/foirf0503b004.pdf>>
- 49) 18 U.S.C. §1084.
- 50) 미국 법무부는 통신법(18 U.S.C. §1084)의 적용 예외를 스포츠베팅에 대해서만 적용하도록 했다. Virginia A. Seitz, *Whether Proposals By Illinois and New York to Use the Internet and Out-Of-State Transaction Processors to Sell Lottery Tickets to In-State Adults Violate the Wire Act*, Memorandum Opinion for the Assistant Attorney General, Criminal Division, September 20, 2011. [2017.04.17. 검색]
<<http://www.justice.gov/olc/opiniondocs/state-lotteries-opinion.pdf>>

서 금지되는 도박영업을 하는 것을 연방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의회는 인터넷을 통한 불법적인 베팅이나 도박을 금지하는 불법인터넷 도박금지법(Unlawful Internet Gambling Enforcement Act)⁵²⁾을 통과시켰다. 밑에서 설명할 온라인 도박의 문제도 위 법률들에 적용받을 수 있다.

다. 블록체인과 온라인사기 발생가능성

현재 미국에서의 예측시장에 대한 규제환경은 엄격하고 적대적인 상황이나,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이용자들은 규제를 주관하는 중개기관의 개입이 없는 직접적인 예측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면, 비트코인을 사용하여 주식거래를 하고자 하는 A가 구글과 애플 주식의 장래가격에 대하여 베팅을 원한다고 가정해보자. A는 비트코인 거래중개 사이트 게시판 또는 거래자간 네트워크상 비트메시지에 자신은 구글과 애플의 주식이 1분기, 즉 3개월 이내에 10% 이상 상승한다고 생각하며, 자신의 예측에 5 BTC를 베팅한다고 공지할 수 있다. 이러한 메시지를 보고 오히려 해당 주식이 하락한다고 믿는 사람들은 가치하락에 자신의 비트코인을 베팅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다. 베팅당사자들은 그들의 메시지와 함께 비트코인을 다수서명주소로 보내고, 중재인은 베팅 종료일에 어느 당사자가 구글과 애플의 주식이 가격에 대한 예측이 옳았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그 후 중재인은 해당 거래에 필요한 서명을 제공하고 베팅의 승자에게 비트코인을 지급하게 된다.

이러한 방식은 단지 주식시장에서 있을 수 있는 일만이 아니다. 날씨예측이나 상품가격의 예측, 심지어 요인암살이나 테러리스트의 공격에 대한 예측 등에 이르기까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에 대한 모든 것에 적용할 수 있다. 예측을 기준으로 베팅하는 광범위한 사항이 시장의 범위에 속하게 된다. 더욱이 각종 선거 결과나 영화 박스오피스 수익 등 구조화된 데이터로 표현되는 이슈에도 대입할 수 있는 시장이 된다. 이처럼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계약들은 중개기관이 없어 규제가 어려우므로 얼마든지 온라인 사기로 연결될 수 있으며, 결국 정부당국에서 규제의 어려움을 제기할 수 있는 사안이다. 또한 새로운 코인들이 우후죽순

51) 18 U.S.C. §1955.

52) 31 U.S.C. §§5361-5367.

생겨나면서 신생 코인의 부흥을 위해 투자유치 명목으로 이른 시기에 수익을 낼 수 있다는 배당금 지급을 약속하는 방식의 폰지 사기(Ponzi Scheme)가 발생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적용되는 법률조항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으로서,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라. 가상화폐를 통한 대출사기

국내에서도 가상화폐를 이용한 사기방식으로 저금리의 전환대출 관련 사례가 존재한다. 저금리로 전환대출이 가능하다고 접근해 각종 수수료 명목으로 현금 대신 비트코인을 편의점에서 구매해 영수증을 찍어 보낼 것을 요구하는 수법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거래소를 통해 매매할 수 있으나 일부 거래소는 거래 편의를 위해 시중 편의점에서도 판매하고 있어서, 예컨대 사기범은 고금리대출로 어려움을 겪는 대출수요자(피해자)에게 햇살론 같은 정부정책상품으로 전환대출을 안내해 준다고 접근한 후 대출 받기 위해선 과거 연체기록을 삭제해야 한다며 수수료 명목으로 편의점에서 비트코인을 사서 보낼 것을 요구한다. 대출수요자가 시중 편의점에서 24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 선불카드를 구매한 뒤 휴대폰 카메라로 영수증(선불카드와 동일한 형태)을 찍어 사기범에게 전송한다. 사기범은 전송받은 영수증에 쓰인 비밀번호(PIN번호; 영문과 숫자를 혼용한 20자리 번호)로 관련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현금화해 잠적하는 방식이다. 금융감독원에서는 “비트코인의 경우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법정통화가 아니고 자금세탁방지법상 금융거래정보의 대상도 아니므로 자금세탁이나 불법거래에 사용될 우려가 상존”⁵³⁾한다고 설명했다.

기존 대출사기는 주로 대포통장을 활용하여 횡행해왔으나, 금융당국이 통장개설 때 단기간에 다수계좌를 개설한 자 또는 미성년자에 대해 금융거래목적의 확인이나 증빙서류를 요청하기에 이르자 사기범들이 현금 요구 대신 비트코인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전환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규제상 금융회사의 경우 대출 때 소비자로부터

53) 조세일보 윤진식기자, “비트코인 '비튼' 대출사기 빈발...1분기만 20건·1.2억원”, 2017.04.13.자 기사 참조. [2017.04.19. 검색]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17/04/20170413321813.html>>

어떤 명목으로도 현금이나 비트코인을 요구하지 않으며 수수료를 받는 것은 불법이다. 적용되는 법률조항은 형법 제347조(사기)에 앞서 대출사기에 대한 특별법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로서, 소비자로부터 대출중개 수수료를 받으면 이 법조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2. 온라인 도박

위의 예측계약에서 설명한 바대로 이는 사행계약에 속하는데 이러한 계약에 대한 적대적인 환경에도 불구하고 현재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로 표시된 도박이나 이원옵션 등을 제공하는 다수의 온라인 도박시장이 존재한다. 온라인 도박서비스를 제공하는 운영자들은 비트코인 사용 자체는 규제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가. 미국 사법기관의 입장

미국 내 법원이 비트코인을 사용한 도박을 도박금지에 대한 방어책으로 보는지 여부는 분명하지 않다. 미국은 각 주마다 주법에서 도박거래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기회(chance), 보상(prize), 대가(consideration)의 세 가지 요소가 있을 것을 요한다⁵⁴⁾고 하고 있다. 여기서 문제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가 대가로서 기능하는지 여부인데, 미국의 법원들은 종전에도 ‘대용물대가(token consideration)’ 사례에 대해서 대가성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았다. 엄격한 규제와 일반적인 사회인식에 비추어 보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의 법적 성격에 대한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나 법원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로 표시된 온라인 도박에 대해서도 도박죄를 적용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54) *Midwestern Enters. v. Stenehjem*, 625 N.W.2d 234, 237(2001). [“The three elements of gambling are generally recognized as consideration, prize, and chance.”]

나. 블록체인과 온라인상 도박행위

이용자와 도박업체 간에 중개기관이 없는 가상화폐의 특성상 역시나 형사제재를 위한 증거수집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기존부터 유지되었던 온라인 도박의 방식에서는 어떤 이용자가 해당 도박 사이트를 방문하여 계정을 만들고 자신만의 계좌를 만들어 그 계좌에 다른 수단을 통해서 돈을 예치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추적할 루트가 있었다. 이용자들은 계좌잔고에서의 금액을 이용하여 온라인 도박을 이용하였고, 일정 시점 후에 수익을 포함한 자금을 그들의 계좌에서 인출할 수 있었던 것이다. 정부당국이 해당 사이트를 폐쇄하고자 한다면, 이용자들은 그들의 계좌에 있는 잔액에 대한 접근권한을 잠재적으로 상실할 수 있는 것이어서 규제가 가능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전통적인 온라인 도박의 구조와는 대조적으로 계좌의 창설이 요구되지 않는 온라인 도박시장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베팅이 단순히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로 이루어진다. 이른바 ‘사토시다이스(SatoshiDice)’라는 온라인 도박 사이트⁵⁵⁾가 있는데, 이곳에서의 도박은 오직 서비스로만 이루어지며 베팅을 하면 즉각 반영되는 구조이다. 이러한 사이트에서는 가상화폐가 베팅 순간에 곧바로 반영된다. 이용자 각자에게 부여된 서로 다른 다이스 주소는 서로 다른 당첨가능금액과 그에 상응하는 승산 수치를 지닌다. 이러한 구조는 도박 경기를 위해 어떠한 계좌나 예치금도 필요치 않음을 의미한다. 해당 사이트에서 하는 것은 베팅 주소를 열거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는 곧 온라인도박 사이트의 도메인이 압류되더라도 해당 사이트의 서버가 비트코인 거래를 계속하는 이상 위의 작동과정에는 영향이 없다는 것을 말한다. 해당 서버가 폐쇄되더라도 이용자들은 당장 손실을 가져오는 보유계좌의 잔액이 없는 것이다.

55) 헤럴드경제, “‘지갑’에 들어온 비트코인…한국인들도 꺼내 쓰다…”, 2013.12.12.자 기사 참조.
[2017.04.21. 검색] <<http://superich.heraldcorp.com/superich/view.php?ud=20131212000533&sec=01-71-02&jeh=0&pos=>>>

3. 해킹 및 횡령 또는 절도

최근 가상통화 거래가 활발해졌지만 블록체인 보안성에도 불구하고 해킹, 횡령 등의 사고가 잇따라 발생해왔다. 2014년 2월 세계 최대의 비트코인 거래소였던 ‘마운트곡스’(Mt.Gox)는 일본 법원에 파산신청을 했었는데, 처음에는 거래소 해킹으로 알려졌으나 CEO인 Mark Karpeles가 자신의 현금 계좌를 부정한 방법으로 조작하고 잔액을 100만 달러로 부풀려 횡령한 혐의로 체포됐었다. 2015년 1월에는 슬로베니아에 본사를 둔 ‘비트스탬프(Bitstamp)’에서도 해킹사고가 일어나 해당 사이트가 보유한 비트코인의 약 12%인 18,866 BTC를 도난당했고, 2016년에는 홍콩 ‘비트피넥스(Bitfinex)’에서 119,756 BTC(한화로 약 725억 원)를 해커들에 의해 해킹 당해 예금과 인출 등 모든 거래가 중지된 적도 있다.⁵⁶⁾ 또한 2017년 1월 국내 거래소에서는 SNS 문자인증방식에서 한 고객이 해킹을 당해 피해를 입은 사건이 발생하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최근에는 거래소 서버 폭주로 인한 사고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2017년 3월 17일 국내 한 거래소에서는 ‘이더리움’ 가상통화의 열풍으로 거래량이 폭주해 일시적으로 서버가 정지되고 입출금이 지연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현재 국내의 거래소들 규모가 영세하다 보니 종종 발생하는 전산처리 문제였던 것으로 보인다. 가격의 급등락이 있을 경우 주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거나 잘못된 주문이 입력되는 경우, 입출금이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손해배상책임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다.

한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에서는 2017년 3월 10일 윙클보스(Winklevoss) 형제가 신청한 ‘비트코인 트러스트 ETF (상장지수펀드)’의 상장 승인을 또다시 거부했다. 이로 인해 전 세계의 많은 비트코인 관련 투자자들은 실망했을지도 모르겠지만, 오히려 세간에 관심을 받은 사항은 승인거부 사실 자체가 아니라 승인거부의 사유였다. 비트코인 트러스트 ETF의 상장문제가 거론되었을 때부터 전문가들은 해당 ETF의 승인 가능성을 25% 정도로 낮게 예측했기 때문에 승인이 거부된 후 비트코인 가격이 18%가량 하락했어도 즉

56) 머니투데이 김태형, “잇단 비트코인 해킹·횡령사고…내 돈은 안전할까?”, 2017.04.14.자 기사 참조 [2017.04.20. 검색]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7032210120661648&outlink=1>>

시 회복될 수 있었다⁵⁷⁾고 한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승인거부의 사유로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이뤄지는 상당수 거래에 대한 규제가 어렵고 투자자와 대중을 보호하고 사기와 조작행위를 막는 데 미흡”⁵⁸⁾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것은 아직 비트코인에 대한 상당한 불신이 깔려 있음을 반영한다. 거래소의 해킹 및 횡령 사고와 더불어 가상통화가 지나치게 가치 변동이 심한 것은 비트코인을 통한 거래의 안전성과 투명성에 대한 의심을 키웠다고 볼 수 있다.

4. 테러와 마약 범죄

앞서 언급했던 국제적으로 공포를 조성하는 IS무장단체와 같은 테러조직의 경우 자금을 확보하고 유통하는 데에 가상화폐가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또한 각종 국제범죄에 쓰이는 불법자금을 마약재배와 유통을 통하여 마련하는 경우가 많은데다 이를 유통하는 데에도 충분히 가상화폐가 쓰일 수 있다. 실제로 실크로드(Silkroad)라는 사이트는 비트코인으로 마약을 밀거래하다 적발되어 폐쇄⁵⁹⁾된 바 있다. 익명성이라는 특성이 자금출처를 추적하는 일을 어렵게 하고 있기에 최근에는 인터폴과 유로폴이 비트코인 및 가상화폐를 사용하는 범죄 해결에 협조하기로 결의⁶⁰⁾했다. 유로폴은 관련 성명에서 “이러한 협조는 가상화폐가 범죄에서 사용됨을 차단하고, 범죄 자산의 추적과 몰수를 목적”으로 한다⁶¹⁾고 하였다. 특히 유로폴은 2015년 여름 비트코인 관련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에이전트들의 가상화폐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57) 머니투데이 김태형, 앞의 기사 참조. [2017.04.20. 검색]

58) SEC, Order Disapproving a Proposed Rule Change, as Modified by Amendments No. 1 and 2, to BZX Rule 14.11(e)(4), Commodity-Based Trust Shares, to List and Trade Shares Issued by the Winklevoss Bitcoin Trust, March 10, 2017. [2017.04.21. 검색]
<<https://www.sec.gov/rules/sro/batsbzx/2017/34-80206.pdf>>

59) 헤럴드경제, 앞의 기사 참조. [2017.04.21. 검색]
<<http://superich.heraldcorp.com/superich/view.php?ud=20131212000533&sec=01-71-02&jeh=0&pos=>>>

60) 2015년 인터폴-유로폴 사이버범죄 컨퍼런스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된 사항이었고, 비트코인 및 가상화폐가 돈세탁과 각종 범죄로 갈취된 현금의 송금 등을 위한 수단으로 쓰이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음.

61) 네이버블로그, 비트코인뉴스피드(비트코인 경제, 재닛 엘런, 인터폴), 2015.10.06.자 기사 참조. [2017.04.20. 검색] <<http://spikgtg.blog.me/220501224315>>

인터폴 내의 자체적인 가상화폐와 블록체인을 개설⁶²⁾한 바 있다.

5. 탈세 범죄

일단 각 나라마다 과세기준은 상이하다.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의 사용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주요국들 사이에서도 비트코인을 금과 같은 자산으로 볼 것인지, 비트코인을 재화로 판단하여 결제수단으로만 초점을 맞출 것인지 확실하게 판단하기가 애매하기 때문이다. 최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미국, 영국, 독일, 호주,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싱가포르 등의 국가들이 세운 과세기준을 조사한 결과, 비트코인의 자산적 성격에 대한 과세기준은 스위스를 제외하고 조사대상국들 내에서 매우 유사하게 나타났다⁶³⁾고 한다. 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다소 상이하지만 소득세 혹은 자본이득세상의 현행규정에 따라 과세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설명도 있다. 가상화폐를 화폐의 일종으로 인정한 일부 국가에서는 비트코인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고 있고, 다른 일부 국가에서는 이를 자산으로 보고 비트코인 공급 자체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지침을 마련해 두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가상화폐가 조세회피처(super tax heaven)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⁶⁴⁾되고 있는데, 암호화된 가상화폐의 경우 과세관청에서 관련 거래 정보를 그대로 접근할 수 없다면, 그 자체만으로 ‘숨은 거래’를 만들 수 있다⁶⁵⁾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비트코인이 거래될 경우 과세상 쟁점이 될 세목은 부가가치세, 사업소득세, 양도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등을 꼽을 수 있는데, 이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재화와 용역의 법적 정의를 비추어볼 때, 비트코인 공급에 대한 과세의 근거가 부족하다면서, 납세자의 자발적인 신고와 동시에 거래소의 거래정보 보고를 위해

62) 네이버블로그, “비트코인 범죄 방지를 위한 가상 통화 제작”, 2015.09.18.자 기사 참조.

<<http://softmate1.blog.me/220485614702>> [2017.04.21. 검색]

63) 조세일보, “[카드뉴스] ‘가상화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2016.06.21.자 기사 참조. [2017.04.21. 검색] <<http://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4504780&memberNo=16121545&vType=VERTICAL>>

64) Marian, Omri, *Are Cryptocurrencies Super Tax Havens?*, 112 Michigan Law Review First Impressions 38, 2013, pp.44-47.

65) 정승영, 앞의 논문, 126면.

별도의 제재상 조항이 필요하다는 입장⁶⁶⁾이 있다.

Ⅳ. 가상화폐를 이용한 범죄에 대한 대처방안

1. 온라인 사기에 대한 대처방안

위에서 예측계약이라는 형태로 온라인 사기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하여 언급하였는데,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계약들은 중개기관이 없어 규제가 어려우므로 얼마든지 온라인 사기로 연결될 수 있으며, 결국 정부당국에서는 규제의 어려움을 제기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화폐의 흐름을 감시할 수 없는 이상 국내 비트코인 거래소 상황을 항상 주시해야 한다. 또한 새로운 코인들이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신생 코인의 부흥을 위해 투자유치 명목으로 이른 시기에 수익을 낼 수 있다는 배당금 지급방식으로 사업을 유도하는 사기가 발생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이며, 최대한 신생 가상통화가 출범할 때 광고하는 과도한 수익 약속에 대하여 신뢰하지 않도록 하고, 신생 가상통화에 투자명목으로 자금을 투입하려는 행위 전에 살펴보고 주의하도록 충분한 사회적 교육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한편, 국내에서 발생한 저금리의 전환대출 관련 사례를 언급했는데, 이를 금융감독원이 행위양태를 보고 먼저 파악한 만큼 비트코인으로 거래되어 사기자금의 흐름이 끊기기 전에 미리 수상한 행위를 차단할 수 있도록 향후에도 감시체계를 잘 유지해야 할 것이다.

2. 온라인 도박에 대한 대처방안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의 법적 성격에 대한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나 법원은 비트코인으로 표시된 온라인 도박에 대해서도 형법상 도박죄를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러한 기존 온라인 도박의 구조와는 대조적으로 계좌의 창설이

66) 조세일보, 앞의 기사 참조. 2015년 말에 조세관련학회 학술대회에서 정승영 한국지방세연구원 부연구원이 한 발언으로 소개되어 있다.

요구되지 않는 온라인 도박시장에서는 베팅이 단순히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로 이루어진다. 블록체인 기반의 온라인 도박 사이트에서의 도박은 베팅을 하면 즉각 반영되는 구조이다. 도박 사이트의 도메인이 압류되더라도 서버가 비트코인 거래를 계속하는 이상 위의 작동과정에는 영향이 없다는 것이고, 서버가 폐쇄되더라도 이용자들은 당장 손실을 가져오는 보유계좌의 잔액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온라인 도박 사이트의 생성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없다면, 베팅금액 제한과 사이트 등록 여부에 대한 사후감독시스템을 조금 더 확실하게 개발하여 운영하는 방향으로 규제방법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한편, 복권형 도박은 도박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나 현재의 복권 시스템을 안전하게 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하면 굳이 범죄로 여기지 않아도 될 듯하다. 비트코인이 사용하는 블록체인 시스템과 다수자 서명거래를 사용하면 중개기관의 개입이 없어도 다수인이 참여하는 복권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향후에는 수백억 달러의 세계적인 온라인 복권 시스템의 출현을 볼 수도 있다. 이러한 시스템들은 비공식적이면서 비합법적일 수 있으나, 기술적 측면에서 보면 공정하고 검증 가능한 것들이다. 기술에 근거한 사후검증이 있으면 충분할 것이다. 따라서 규제가 어려운 것은 차치하더라도 오히려 규제에 필요한 기술적·인적 비용이 크게 증가할 수도 있음을 고려하여야 한다.

3. 해킹 및 횡령 또는 절도에 대한 대책방안

거래소가 해킹·횡령으로 파산해 문을 닫는 경우 거래자들은 예치금이나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없다. 민간기업인 가상통화 거래소는 예치금과 비트코인을 같이 보관해 해킹 및 횡령 또는 절도에 취약한 구조다. 이런 이유로 비트코인에 오랫동안 투자했던 사람들은 거래소 여러 군데에 자금을 분산하거나 하드웨어 지갑이란 개인 USB에 비트코인을 따로 저장하기도 한다고 앞에서 설명하였다. 2017년 4월부터 일본은 개정된 자금결제법을 시행해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를 공식 결제수단으로 인정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 비트코인이 상품인지 화폐인지에 대한 정의조차 마련돼 있지 않다. 또한 가상화폐가 통화 또는 통화대체물로

서 환금성이 주식보다 강한데도 거래소에 대한 적절한 규정이나 규제가 없다. 비트코인 거래소는 정확한 업종이 없어 ‘전자상거래업’으로 등록을 하고 거래를 중개하고 있는 실정이다. 민간기업인 가상통화 거래소들이 모든 결제와 자금을 관리하다 보니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주식시장의 경우에는 증권거래소를 통해 주식거래가 체결되고 일반 증권회사는 이를 중개하고, 주식을 사고판 자금은 한국 예탁결제원에서 집중해 관리·보관하고 있어 주식거래는 해킹 및 횡령 등의 사고가 발생해도 개인들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낮으며 개인 예치금은 안전하게 보관된다는 점과 대비된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결론적으로 가상통화시장이 활성화하려면 거래자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이 우선적으로 조성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전자상거래에서 쓰이는 에스크로우(escrow) 제도처럼 거래를 관리하며 예치금을 따로 보관하여 결제하는 제3지대 시스템 도입도 고려해보면 좋을 것이다.

4. 테러와 마약, 그리고 탈세 범죄 예방을 위한 대처방안

위에서 언급한대로 가상화폐가 테러 및 마약 등을 위한 불법자금수단 혹은 탈세를 위한 조세회피처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소개했는데, 결국 화폐의 흐름을 통제범위에 두는 방법은 세금규제의 틀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려면, 가상통화를 화폐로 정식으로 인정하는 법제가 우선되어야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재화와 용역에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가 해당될 여지가 많지 않기 때문에 가상화폐의 공급에 대한 과세의 근거가 부족하므로, 종합금융소득세 등 직접세 영역에 두어 납세자의 자발적인 신고의무도 필요하지만, 가상화폐거래소의 거래정보보고의무 부여를 위해 별도의 세법상 조항이 필요할 것이다.

V. 결 론

지금까지 가상화폐의 개념과 기반기술 및 법제도적 방향을 알아보고, 가상화폐와 연관된 온라인사기, 온라인도박, 테러, 해킹 및 횡령, 탈세 등의 범죄 가능성을 살펴

본 후 그 예방 방안에 대한 고민을 해보았다.

각국의 금융당국에 의한 통제를 받지 않겠다는 취지로 온라인에서의 안전한 거래를 표방하여 블록체인의 방식의 가상화폐가 자발적으로 등장하였는데, 가상화폐가 갈구한 자유는 오히려 지하경제에서의 수단을 확대한 결과도 초래하였다. 지금까지 정부당국은 그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중개기관에 대한 규율만으로 충분했지만,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의 블록체인 시스템이 확산될 경우 단순한 지급행위를 통제하는 것조차 어렵게 된다. 만일 중개기관 없이 수백만의 P2P 이용자들만 있다면,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가능하더라도 그 집행비용이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정부가 통제를 함에 있어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을 감안해야 한다. 하향식 규제가 적절한 대안이 아니라면, 정책당국자는 탄력적이고 변경 가능한 수단에 초점을 맞춘 대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의 가치도 원화와의 비율을 통해 책정될 것이기 때문에 가상화폐가 국내에 한정되어 유통된다면 통화정책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나, 국내외의 환경 변화로 국내에 유통되는 가상화폐의 거래량이 급격히 증감한다면 국내에서의 화폐가치도 그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그러므로 가상화폐가 정식으로 인정되고 본격적으로 유통된다면 한국은행 등 금융당국이 외환관리와 유사한 개념으로 가상화폐 거래를 관리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내에서 거래되는 가상화폐의 거래량과 상황을 통합거래소를 통하여 파악할 필요가 있다. 다만, 금융기관 등 중개기관이 없이 거래주체의 자발적인 신고에 의존해야 하므로 그러한 규제의 실효성을 담보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가장 좋은 감독방법은 가상화폐를 금융당국이 주도하여 국내용 가상화폐를 개발하여 유통시키는 것이겠지만, 가상화폐의 자율적 성격에 맞지 않을 뿐더러 세계적으로 유통되는 기능이 핵심인 화폐의 특성상 정부 주도의 가상화폐가 잘 운영될지도 확신할 수 없다. 가상화폐의 공신력을 위해 세계 금융당국 관계자가 모여 공용 가상화폐를 만들기로 합의하거나 현재 거래되는 가상화폐 중 거래량과 유통의 원활함을 기준으로 몇몇 가상화폐를 지정하는 방법도 가능하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아직 논의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현재 논의가 가능한 것은 금융당국에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의 거래상황을 파악하고 감시하며 조사결과를 토대로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는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문제이다.

정부당국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근거한 특정한 금융거래를 배제하거나 제한함에 있어 그 규제로 인한 이익과 손실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규제비용과 집행비용의 합은 이익보다 적어야 하는 것이다.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쓰이는 블록체인 기술이 탈세의 가능성을 높이고 온라인사기 및 온라인도박을 증가시키며, 해킹과 횡령으로 이어지기도 하면서 중개기관의 부재가 규제의 어려움을 초래하겠지만, 정부는 변화하는 기술에 반해 규제일변도로 비용을 늘리는 싸움을 벌이기보다는 이익을 창출하는 바람직한 결과를 산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참고문헌

[국내문헌]

- 김태오, “가상화폐의 이용현황과 시사점: Bitcoin과 Linden Dollar를 중심으로”, 『지급결제와 정보기술』 제53호, 금융결제원 금융결제연구소, 2013.7.
- 김홍기, “최근 디지털 가상화폐 거래의 법적 쟁점과 운용방안”, 『증권법연구』 제15권 제3호, 한국증권법학회, 2014.12.
- 맹수석, “일본의 지급결제제도의 최근 규제 동향과 시사점”, 비교사법 제23권 제2호(통권 3호), 2016.5.
- 이동규, 『비트코인의 현황 및 시사점』,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2013.
- 이혁준·이수미, “비트코인의 신뢰구조와 이중 지불의 위협”, 정보보호학회지 제26권 제2호, 한국정보보호학회, 2016.4.
- 이현정, “가상화폐의 금융법 규제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비트코인을 중심으로-”, 『과학기술법연구』 제21권 제3호, 2015.
- 전주용·여은정, “비트코인의 이해 - 금융경제학적 관점에서”, 『Korea Business Review』 제18권 4호, 한국경영학회, 2014.11.
- 정유신·구태언, 『핀테크, 기회를 잡아라(돈의 흐름을 바꾸는 금융 대혁명)』, 한국경제신문사, 2015.
- 정승영, “가상화폐(Virtual Currency)의 세법상 분류와 과세 - 비트코인(Bitcoin) 사례를 중심으로-”, 『조세학술논문집』 제31집 제1호, 한국국제조세협회, 2015.02.

[외국문헌]

- Adam Ozimek, *The Regulation and Value of Prediction Markets*, Mercatus Center Working Paper, March 12, 2014.
<http://mercatus.org/sites/default/files/Ozimek_PredictionMarkets_v1.pdf>
- Andrea M. Cocoran, CFTC Letter to Professor George Neumann, CFTC Letter No. 91-04a, Division of Trading and Markets, February 5, 1992.
<<http://www.cftc.gov/ucm/groups/public/@Irlettergeneral/documents/letter/9>>

2-04a.pdf>

Andrea M. Cocoran, CFTC Letter to Professor George Neumann, CFTC Letter No. rf05-003, Division of Trading and Markets, June 18, 1993.

<<http://www.cftc.gov/files/foia/repfoia/foirf0503b004.pdf>>

CFTC, CFTC Charges Ireland-Based “Prediction Market” Proprietors Intrade and TEN with Violating the CFTC’s Off-Exchange Options Trading Ban and Filing False Forms with the CFTC, CFTC Press Release, November 26, 2012.

<<http://www.cftc.gov/PressRoom/PressReleases/pr6423-12>>

CFTC Issues Order Prohibiting North American Derivatives Exchange’s Political Event Derivatives Contracts, CFTC Press Release, April 2, 2012.

<<http://www.cftc.gov/PressRoom/PressReleases/pr6224-12>>

Donald Harris, *The New Prohibition: A Look at the Copyright Wars Through the Lens of Alcohol Prohibition*, 80 TENN. L. REV., 2012.

FinCEN, Application of FinCEN’s Regulations to Virtual Currency Mining Operations, FIN-2014-R001, January 30, 2014.

<http://www.fincen.gov/news_room/rp/rulings/pdf/FIN-2014-R001.pdf>

FinCEN, Application of FinCEN’s Regulations to Virtual Currency Software Development and Certain Investment Activity, FIN-2014-R002, January 30, 2014.

<http://www.fincen.gov/news_room/rp/rulings/pdf/FIN-2014-R002.pdf>

Jerry Brito, Houman Shadab, Andrea Castillo, *Bitcoin Financial Regulation: Securities, Derivatives, Prediction Market & Gambling*, Social Science Research Network, working papers series, Draft of August 10, 2014.

Marian, Omri, *Are Cryptocurrencies Super Tax Havens?*, 112 Michigan Law Review First Impressions 38, 2013.

Marcin Andrychowicz, Stefan Dzeimbowski, Daniel Malinowski and Lukasz Mazurek, *Secure Multiparty Computations on Bitcoin*, Cryptology ePrint

Archive: Report 2013/784, January 13, 2014.

<<http://eprint.iacr.org/2013/784.pdf>>

Paul Gomme, *Iowa Electronic Markets*, Federal Reserve Bank of Cleveland Report, April 15, 2003.

<<http://www.clevelandfed.org/research/commentary/2003/0415.pdf>>

SEC, Order Disapproving a Proposed Rule Change, as Modified by Amendments No. 1 and 2, to BZX Rule 14.11(e)(4), Commodity-Based Trust Shares, to List and Trade Shares Issued by the Winklevoss Bitcoin Trust, March 10, 2017. <<https://www.sec.gov/rules/sro/batsbzx/2017/34-80206.pdf>>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Financial Crimes and Enforcement Network, Application of FinCEN's Regulations to Persons Administering, Exchanging, or Using Virtual Currencies(Regulatory Guidance, FIN-2013-G001,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March 18, 2013).

<<https://www.fincen.gov/resources/statutes-regulations/guidance/application-fincens-regulations-persons-administering>>

Virginia A. Seitz, *Whether Proposals By Illinois and New York to Use the Internet and Out-Of-State Transaction Processors to Sell Lottery Tickets to In-State Adults Violate the Wire Act*, Memorandum Opinion for the Assistant Attorney General, Criminal Division, September 20, 2011.

<<http://www.justice.gov/olc/opiniondocs/state-lotteries-opinion.pdf>>

福田政之, “ビットコインなど仮想通貨の米國における法規制の動向と日本法への示唆”, NBL No.1027(2014. 6. 15).

[인터넷자료]

네이버블로그, “비트코인 범죄 방지를 위한 가상 통화 제작”, 2015.09.18.자 기사
<<http://softmate1.blog.me/220485614702>> [2017.04.21. 검색]

네이버지식백과, “전자화폐[digital cash]”, NEW경제용어사전 참조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782627&cid=42111&categoryId=42111>>

네이버지식백과, “전자화폐[electronic cash, 電磁貨幣]”, 두산백과 참조.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67738&cid=40942&categoryId=32828>>

네이버지식백과, “가상화폐”, 시사상식사전 참조.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968137&cid=43667&categoryId=43667>>

네이버지식백과, “블록체인 [blockchain security technology]”, 시사상식사전 참조.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838482&cid=43667&categoryId=43667>>

네이버지식백과, “블록체인 [blockchain security technology]”, 환경 경제용어사전 참조.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723988&cid=42107&categoryId=42107>>

네이버지식백과, “비트코인”, 환경 경제용어사전 참조.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067627&cid=42107&categoryId=42107>>

네이버지식백과, “라이트코인[Litecoin]”, 시사상식사전 참조.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060043&cid=43667&categoryId=43667>>

네이버지식백과, “이더리움 [Ethereum]”, 시사상식사전 참조.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3440381&cid=43667&categoryId=43667>>

네이버지식백과, “Ethereum - 이더리움, 이시리움, 에테리움”, 지형공간정보체계 용어사전 참조.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3476223&cid=58439&categoryId=58439>>

네이버 지식백과, “디지털옵션”, 매일경제 참조.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9964&cid=43659&categoryId=43659>>

네이버캐스트, “[용어로 보는 IT] 분산된 공개장부, 세상을 바꾼다. 블록체인(Block chain)”, 블로터기사 참조.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3578241&cid=59088&categoryId=59096>>

네이버캐스트, “[물리산책] 거래장부 공유해 금융의 장 새로 쓴다, 블록체인”, 과학동아 참조.

<http://navercast.naver.com/contents.nhn?rid=20&contents_id=131378>

네이버캐스트, “대안화폐(Altcoin)”, 용어로 보는 IT 참조.

<http://navercast.naver.com/contents.nhn?rid=122&contents_id=65476>

머니투데이, “잇단 비트코인 해킹·횡령사고…내 돈은 안전할까?”, 2017.04.14.자 기사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7032210120661648&outlink=1>> [2017.04.20. 검색]

서울경제신문, “글로벌 기업들, ‘비트코인’을 도입하다”, 2014.12.12.자 기사
[2017.03.28. 검색]

<<http://economy.hankooki.com/lpage/it/201412/e20141212173826117700.htm>>
아시아투데이, “가상 통화 법적 화폐로 인정하는 일본...“기업·주식시장에 순풍 전
망””, 2017.03.30.자 기사 [2017.04.20. 검색]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70330010019991>>
아주경제, “CJ E&M N스크린 영화 서비스 ‘빙고’에 비트코인 결제 적용”,
2014.11.26.자 기사 [2017.03.28. 검색]

<<http://www.ajunews.com/view/20141126141203442>>
이코노미조선, “가상화폐 비트코인, 금값 추월하며 역대 최고가 경신 공급 부족해
가격 상승, 테러·범죄 악용 우려도”, 2017.03.20.자 기사 [2017.03.27. 검색]

<http://economychosun.com/special/special_view_past.php?boardName=C08&t_num=11413&img_ho=>
이투데이, “[이철환의 돈이야기] 전자화폐와 가상화폐, 뭐가 다르지?”, 2016.12.14.
자 기사 [2017.04.19. 검색]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427135>>
위키피디아, “Peercoin” <<https://en.wikipedia.org/wiki/Peercoin>>

위키피디아, “Emercoin” <<https://en.wikipedia.org/wiki/Emercoin>>

위키피디아, “SHA” <<https://ko.wikipedia.org/wiki/SHA>>

위키피디아, “실크로드(웹사이트)”

<[https://ko.wikipedia.org/wiki/%EC%8B%A4%ED%81%AC_%EB%A1%9C%EB%93%9C_\(%EC%9B%B9%EC%82%AC%EC%9D%B4%ED%8A%B8\)](https://ko.wikipedia.org/wiki/%EC%8B%A4%ED%81%AC_%EB%A1%9C%EB%93%9C_(%EC%9B%B9%EC%82%AC%EC%9D%B4%ED%8A%B8))>

조세일보, “[카드뉴스] ‘가상화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2016.06.21.자 기사
<<http://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4504780&memberNo=16121545&vType=VERTICAL>> [2017.04.21. 검색]

조세일보, “비트코인 '비튼' 대출사기 빈발...1분기만 20건·1.2억원”, 2017.04.13.자
기사 [2017.04.19. 검색]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17/04/20170413321813.html>>

코인마켓캡 <coinmarketcap.com/1>

헤럴드경제, “‘지갑’에 들어온 비트코인...한국인들도 꺼내 쓰다...”, 2013.12.12.자
기사 [2017.04.21. 검색]

<<http://superich.heraldcorp.com/superich/view.php?ud=20131212000533&sec=01-71-02&jeh=0&pos=>>

CoinDesk, *Citi, Micropayments and Social Good: Consensus 2015 Afternoon Sessions*, Yessi Bello Perez, September 11, 2015. [2017.04.28. 검색]

<<http://www.coindesk.com/citi-micropayments-and-social-good-consensus-2015-afternoon-sessions/>>

CoinDesk, *Stanford University startups course: Build a bitcoin crowdfunding site*, David Gilson, July 5, 2013. [2017.04.28. 검색]

<<http://www.coindesk.com/stanford-university-startups-course-build-a-bitcoin-crowdfunding-site/>>

CoinDesk, *Marketplace Bitcoin.de registers with Germany's financial regulator BaFin*, July 31, 2013.

<<http://www.coindesk.com/bitcoin-de-registers-with-germanys-financial-regulator-bafin/>> [2017.04.18. 검색]

FT, *CFTC bans election-based derivatives contracts*, April 3, 2012. [2017.04.17. 검색]

<<http://www.ft.com/cms/s/0/dcf08b92-2a70-11e1-9bdb-00144feabdc0.html#axzz3Dvru0ZbP>>

Political Press, *Motion for a resolution on Bitcoin*—B7-2014-0168, February 4, 2014. [2017.04.15. 검색]

<<http://www.europarl.europa.eu/sides/getDoc.do?pubRef=-//EP//NONSGML+MOTION+B7-2014-0168+0+DOC+PDF+V0//EN>>

The Guardian, *Japan issues guidelines on bitcoin taxation*, March 7, 2014.

[2017.04.27. 검색]

<<https://www.theguardian.com/technology/2014/mar/07/japan-issues-guidelines-on-bitcoin-taxation>>

The Wall Street Journal, *Japan Says Bitcoin Not a Currency*, March 6, 2014.

[2017.04.27. 검색]

<<https://www.wsj.com/articles/japan-says-bitcoin-not-a-currency-1394153509>>

WIRED, *RIAA Sues Napster*, December 7, 2009. [2017.05.01. 검색]

<<http://www.wired.com/2009/12/1207riaa-sues-napster>>

Winheller, Finanzaufsichtsrecht(BaFin-Lizenz) > Unternehmen außerhalb des klassischen Banksektors: Zahlungsdiensteaufsichtsgesetz, E-Geld, Bitcoins etc. [2017.04.19. 검색]

<<https://www.winheller.com/bankrecht-finanzrecht/aufsichtsrecht-bafin-lizenz.html>>

A Study on the Criminal Issues Related to Virtual Currency

Lee, Jung-hoon* · Kim, Du-won**

While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as bustling with that Kim Jong-nam was recently killed, Kim Han-Sol(Kim Jong-Nam's son) said in an internet video that he was alive. At the same time, 'Cheollima Civil Defense' which claims to be a sponsoring organization appeared in the video image, and this organization raises supporting funds as Bitcoin to protect Kim Han-Sol and his family, so a matter of common interest in virtual currency is rising again. Nowadays, Ransomware hacking tool is required to Bitcoin. In this paper, we propose a solution to the problem of virtual currency, especially Bitcoin, which is based on its usefulness and the possibility of occurrence of various crimes such as fraud, gambling, tax evasion, terrorism caused by it and the measures to cope with it.

The value of virtual currency, such as Bitcoin, will be set in proportion to the Korean Won. So, if virtual currency is limited to domestic market, it will have little impact on monetary policy. But, if the volume of transactions of virtual currency circulated only in the country increase or decrease dramatically because of a change in situation at home and abroad, the value of money in the country may fluctuate accordingly. Therefore, if virtual money is formally recognized and circulated in earnest, the financial authorities such as the Bank of Korea should manage virtual currency transactions in a similar way to foreign exchange management. In order to do this,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e volume and situation of virtual currency traded in the country through the integrated Currency Exchange.

* Professor, Ph.D. in Law, Chung-Ang University Law School

**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Intern Researcher, Ph.D. ABD in Law, Chung-Ang Univ. Graduate School

However, it will not be easy to guarantee the effectiveness of such regulation because it will have to rely on voluntary reporting by the trading entity without an intermediary such as a financial institution. The best method of supervision is to develop and circulate domestic only virtual currency led by monetary authorities. But it is not suitable to the autonomous nature of virtual currency, and it is hard to be sure that the government-initiated virtual currency will be operated well on the nature of currency which has crucial function to distribute in the world.

For the purpose of securing the trustworthiness of virtual currency, it is possible for the officials of the World Financial Authority to agree to create a public virtual currency or to designate some virtual currencies based on the smoothness of the transaction and distribution among the virtual currencies currently being traded, but it is difficult to develop heated discussion at this time. Consequently, what can be discussed now is the issue of establishing a dedicated department composed of experts who can identify and monitor the transaction status of virtual currency to the financial authorities and who can propose the prosecution to the investigating authorities based on their findings.

Government authorities must consider the benefits and losses of the regulation in excluding or limiting certain financial transactions based on virtual currency. The sum of regulatory costs and enforcement costs should be less than profits. Although the Blockchain technology used for virtual currency such as Bitcoin makes higher the possibility of tax evasion, increases online fraud & online gambling, leads to hacking and embezzlement, and the absence of intermediary institutions will cause difficulties in regulation, but the government should strive to produce desirable results that generate profits rather than fighting to increase costs in the wholehearted devotion to regulation.

※ Keyword : Virtual Currency, Bitcoin, Mining, Wallet, Blockchain, Online Fraud,
Online Gambling, Hacking, Embezzlement, Larceny, Terrorism,
Narcotic, Tax Evasion